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하는 노후불안 처방전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하는 노후불안 처방전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우리의 노후, 어떻게 하죠?

목차

- 03 우리의 노후, 어떻게 하죠?
- 04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 06 한국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 08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 10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 12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 14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요?
- 16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18 저소득층도 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 20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 22 연금제도,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 24 소득대체율을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 26 더 많은 시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어야 합니다
- 28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국가재정 확충이 필요합니다
- 30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 33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 35 적정수준의 기초연금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37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을 소개합니다

“나도, 너도, 우리는 누구나 늙어요”

“부모님 노후는 어떻게 하죠?”

“자식 키우다 보면, 내 노후 대비는 꿈도 못 꾸는데”

“100세 시대라는데, 어떻게 살죠? 막막해요”

당신이 그리는 노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며 동네 마실을 다니고 가끔 찾아오는 손주들과

즐거워 시간을 보내는 행복한 노후를 꿈꾸고 계십니까?

누구나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여유로운 노년의 삶을 꿈꿉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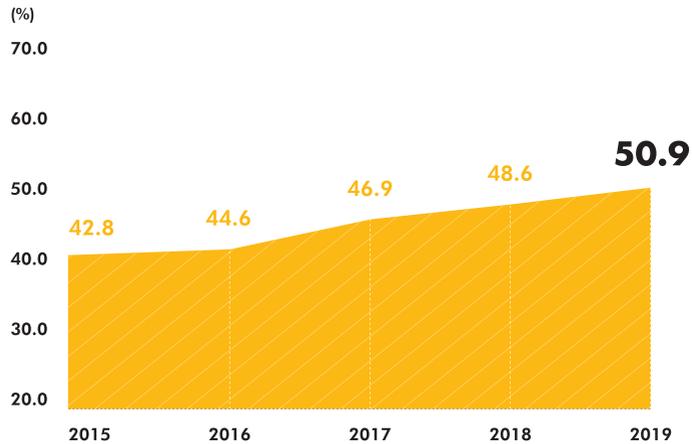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고령자
(65세 이상)
노후 준비율



공적연금
수급률
(65세 이상)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국방부, 「군인연금통계연보」/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

짧은 노동기간과 어려운 노후준비

이제 우리는 '일하기 위해 30년을 준비하고, 30년은 일을 하고, 30년은 노후생활로 보내는 삶'이라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취업도 어렵지만, 일자리에서 버티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은퇴연령 인구(55~64세)가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는 평균연령은 만49.4세(남자 51.2세, 여자 47.9세)에 불과합니다. 한 번 주된 일자리를 떠나게 되면 이전 수준의 소득으로 회복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직장인의 74.1%가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창 일하는 나이에 은퇴 이후를 미리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 종류의 연금제도가 있지만, 이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을뿐더러, 과연 노후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2019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로 40.1%가 '준비할 능력이 없음'이라고 답했으며, 33.7%가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해도 당장 준비에 들어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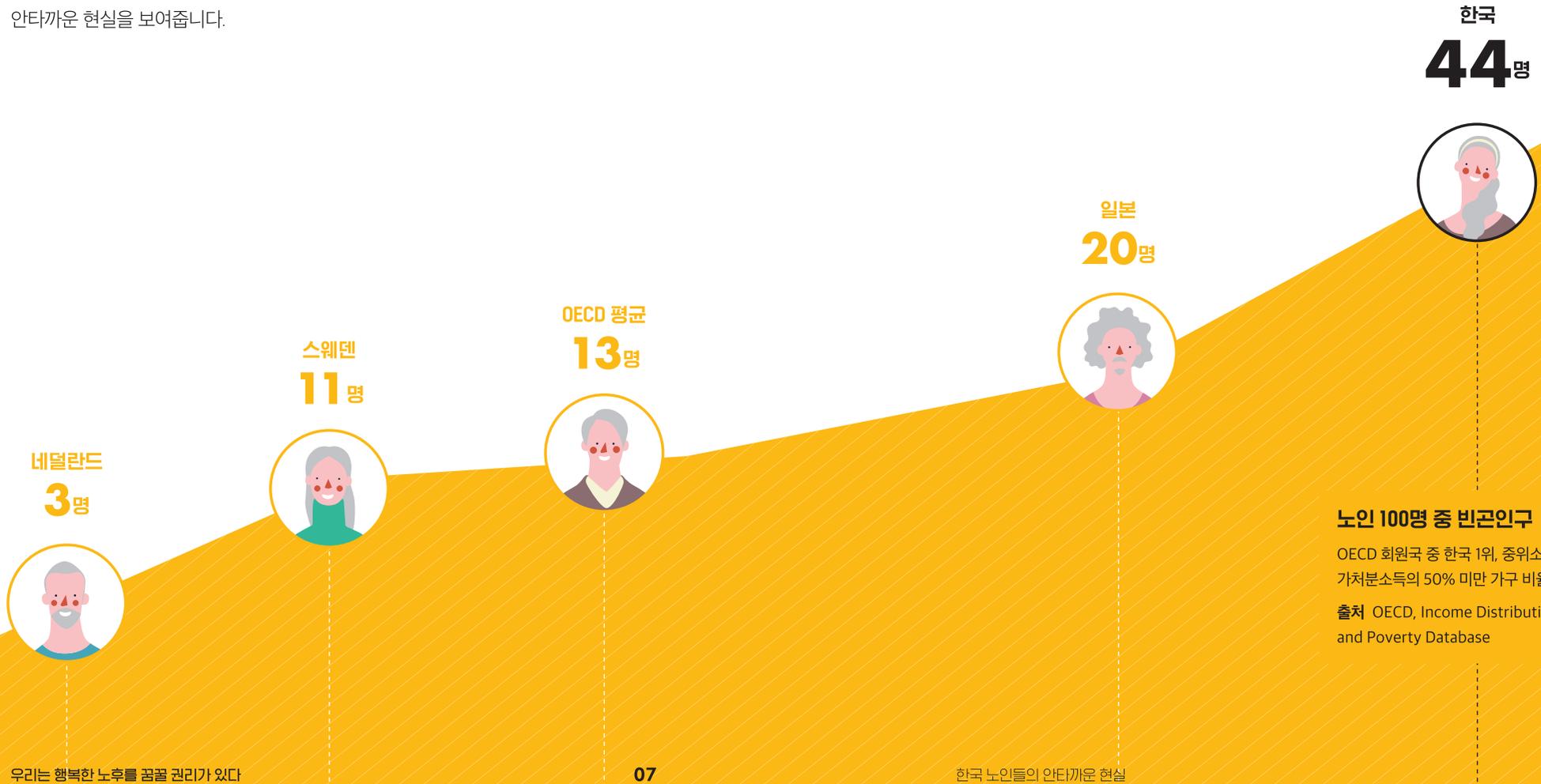
한국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한국 노인들의 현실은 암울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노인빈곤율은 43.8%로 OECD 국가 중 1위이고, OECD 국가 평균에 비하면 약 3배에 달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59명으로, OECD 평균 19명의 3.1배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한국 노인들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노인자살률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인구 10만 명당)



출처 2018 「사망원인통계」, 2019 「자살예방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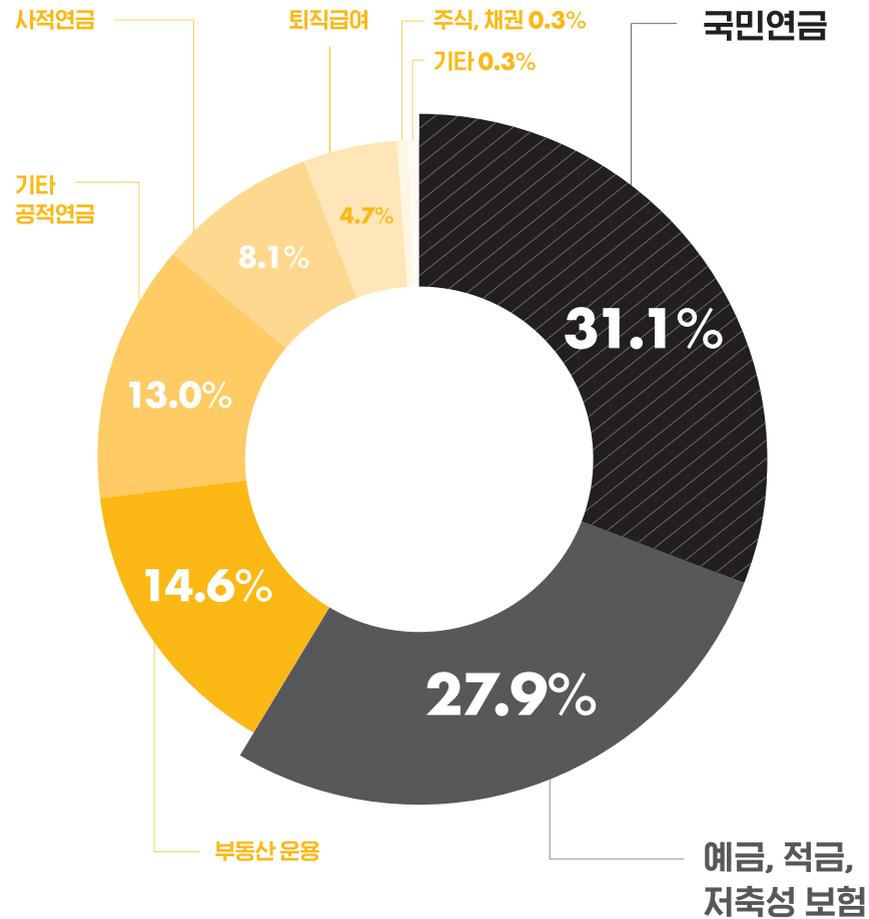


노인 100명 중 빈곤인구

OECD 회원국 중 한국 1위, 중위소득 가처분소득의 50% 미만 가구 비율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base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고령자(65세 이상)의 노후 준비 방법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9

생계급여, 기초연금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2019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약 803만 명 중 약 63만 명의 노인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제 등의 제약으로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도 많고, 약 52만 원 가량의 생계급여는 노인빈곤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530만 명의 노인은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급여 수준 역시 노인빈곤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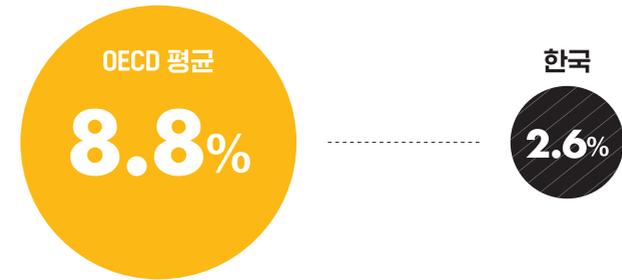
개인연금은 경제활동인구의 약 25%, 퇴직연금은 경제활동인구의 약 21%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축 여력이 있는 중상위 계층 위주로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활용하고 있으며, 퇴직급여의 98%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은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하기 어렵습니다.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써, 국민연금은 더 확대되고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경제활동인구의 94%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행 국민연금제도 가입자 중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위치한 가입자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할 경우 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은 불가능한 미래가 아닙니다.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95%가 100만 원 이하의 연금을 받고, 78%는 50만 원 이하를 지급받지만, 제도를 합리적으로 수정한다면 적절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GDP 대비 노후대비를 위한 공적연금 지출 비교 OECD, Pension at a Glance 2019



잔피엘 위츠먼드, 75세

- 40년 교사 재직 후
세후 1,432유로의 국민연금 수령
(한화 약 **200**만 원)

요한나 위츠먼드, 75세

- 매월 550유로의 국민연금 수령
(한화 약 **77**만 원)



하비 앤더슨 부부, 75세

- 부부 각각 매월 564 캐나다 달러의
기초연금 수령
- 부부합산 774 + 919 = 1,693
캐나다 달러의 국민연금 수령
(총 한화 약 **252**만 원)

출처 KBS 다큐멘터리, 100세 사회의 경고(2015. 5. 방영)

노후에 대한 공적지출, OECD 국가 중 꼴찌

우리나라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은 노인문제를 국가의 문제로 보고 국가재정으로 노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OECD 28개국은 공적연금을 GDP대비 평균 8.8%를 지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지출액이 GDP대비 2.6%에 불과합니다. 노인들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많은 복지국가들은 이 비용의 많은 부분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개인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합니다

많은 복지국가에서는 공적연금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보장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체빈곤율이 높은 국가들조차도 노인빈곤율만큼은 우리나라보다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즉,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것은 결국 국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적연금제도의 개선과 변화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는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①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요?

②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③ 저소득층도 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④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요?

세계의 공적연금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한창 경제활동을 할 시기에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은퇴한 이후에 연금을 받음으로써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회보험입니다. 보험가입 기간에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연금제도를 잘 운영해야 합니다. 세계 170개국에서 국가가 노후를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이미 대부분의 노인들이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국민의 연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노후생활보장의 기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노년기를 맞습니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이후 적절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노년기의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개인 또는 사회의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 내 부양의 한계, 늘어나는 수명, 낮은 출산율, 정체된 경제성장률 등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노후의 삶을 개인 또는 가족의 도움만으로는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연금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부양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내가 낸 보험료를 내가 받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금 은퇴한 부모세대를 부양하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우리 세대를 부양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적인 연대를 통하여 공동으로 노후에 대처하는 세대 간 연대의 원리로 운영됩니다. 길어진 노후 생활을 개인이 홀로 준비해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누구에게나 닦힐 노년기를 함께 준비함으로써 각자가 준비하는 것보다 더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함께 준비하게 되면 자원의 양이 커지고 또 다른 자원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투자를 통해 일정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는 연금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수익은 많은 사람이 연금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수령액의 절반은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되어 사회 불평등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납입한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을 받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받는 소득대체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준으로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많은 경우에는 조금 덜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인
월 평균 소득 245만 원



은퇴 후

월 11만 원
납부하면

※ 총 22만 원 중
11만 원 근로자부담
11만 원 사업자부담

월 98만 원
(40년 가입)
월 62만 원
(25년 가입)
연금을 받아요

※ 물가상승률 반영 /
현재가치기준 2028년 이후 수령시



2020년 직장인 이경희씨(25세)



2060년 은퇴한 이경희씨(65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본인의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한 보험료와 대비하여, 노후에 소득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지급받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40년이라면 노인이 되어 가입 기간 평균소득의 몇 %를 매달 지급 받을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소득의 4.5%와 고용주 부담분 4.5%를 더해서 9%를 40년 동안 납부하면, 본인 소득의 50%(2008년 기준)~40%(2028년부터)를 매월 연금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면, 월소득이 245만 원인 이경희씨는 245만 원의 4.5%인 11만 원을 본인이 내고, 고용주가 11만 원을 함께 부담합니다. 그리고 40년간 납부하면 245만 원의 40%인 월 98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 국민의 평균 보험료 납부 기간은 약 25년입니다. 이경희씨가 25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월 소득 245만 원 가정) 소득대체율은 25%로 떨어지고, 65세 이후에는 245만 원의 25%인 월 62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어집니다. 앞서 이경희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25년을 가입하면 받는 62만 원은 충분한 노후소득이 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민간보험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자산을 마련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민간보험은 실제 해약률이 높아 노년기까지 유지하기가 어렵고, 부동산이나 저축도 쉽지 않아 불안정한 대비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되려면 현재의 소득대체율로는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약속하는 소득대체율이 올라가야 가입 기간이 부족해도 적정 수준의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60%였던 소득대체율이 2028년에는 40%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의 하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으로 어느 정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의 소득대체율은 적당한 것일까요? 법으로 정해진 소득대체율 40%는 보험료를 40년간 꼬박 납부했을 경우 가능한데 이런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늦게 취업하고 일찍 직장에서 나오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상 일반 국민의 가입 기간은 평균 25년 정도입니다. 25년을 가입하면 소득대체율은 약 25%로 떨어

저소득층도 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넌 보험료 대비 몇 배 더 받나?

국민연금 소득수준별 수익비 / 2018년 가입자의 경우

월 소득 **50**만원

월 소득 **227**만원

월 소득 **468**만원

넌 보험료보다
4.5배
더 받아요

넌 보험료보다
2배
더 받아요

넌 보험료보다
1.5배
더 받아요



저소득자 A씨



평균소득자 B씨



최고소득자 C씨

국민연금은 소득이 낮은 사람도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령액의 절반은 균등 부분으로, 나머지 절반은 자신의 평균 소득액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평균소득보다 낮은 가입자들은 소득대체율이 높고, 평균소득보다 높은 가입자들은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로 일정 부분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사회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함께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 양산, 중소상공인의 몰락 등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유한 노인들은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반면, 가난한 노인들은 무연금 또는 저연금으로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노후시기 소득 불평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적연금이 하지 못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하여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 불평등을 치유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미래에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는데요?

연금 고갈이 아니라 적립금의 규모가 축소되는 겁니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는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노인이 되었을 때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 걱정합니다. 실제로 언론과 민간보험회사들은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거짓뉴스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민연금제도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믿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연금 고갈이 아니라 적립금의 규모 축소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고요? 국민연금은 본래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설계된 수정적립 또는 수정부과방식입니다. 많은 국가들은 이미 연금기금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120년 넘게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는 독일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보험료를 쌓아두는 적립방식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적립금이 고갈되고,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현재는 불과 10일 치의 지급준비금을 쌓아놓고 있을 뿐입니다.

적립금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으로 투자되어 있는 대규모의 적립금을 연금지급을 위해 단기간에 현금화할 경우 연금의 구매력이나 자산가치의 하락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립금을 지나치게 쌓아두는 것보다는 적절한 규모를 유지하면서 연금지급 시기에 안정적으로 보험료와 연금지급의 균형이 맞춰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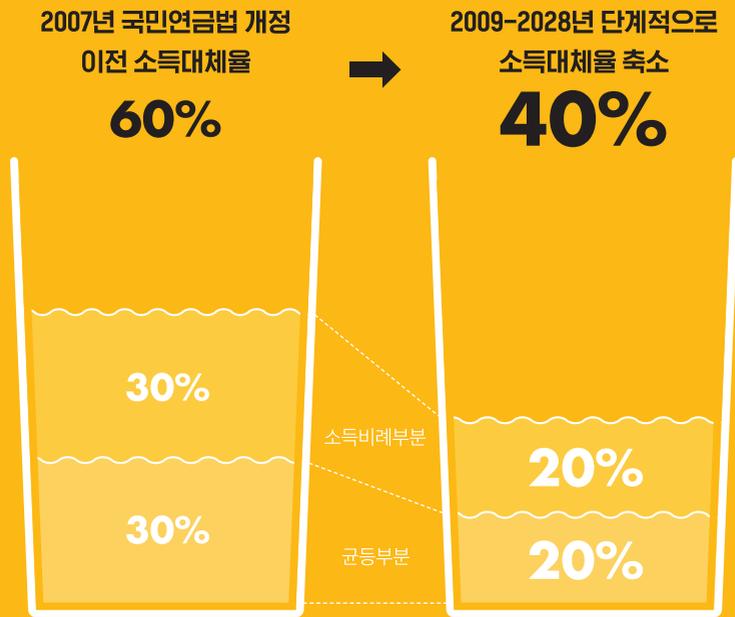
수정적립 또는 수정부과방식	연금제도의 도입 초기에 적립금을 어느 정도 쌓아두었다가 점차적으로 소진시키거나 어느 정도 규모의 예비금을 갖고 있는 방식 ※ 이 방식도 부과방식이며 한국, 미국, 일본 등 5개국 정도에서 시행
부과방식	별도의 적립기금 없이 그 해에 필요한 연금 지급액을 청장년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세금으로 조달하는 방식.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
적립방식	개인이 받을 연금액을 미리 적립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적립기금을 가지고 있음

둘.
연금제도,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 ① 소득대체율을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 ② 더 많은 시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어야 합니다
- ③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국가재정 확충이 필요합니다
- ④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 ⑤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 ⑥ 적정수준의 기초연금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의 급격한 하락



낮아지는 소득대체율,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존엄하고 인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적정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연금은 2007년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기존 60%에서 2028년 40%까지 급격하게 삭감하여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더욱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는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평균 보험료 납부기간이 2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은 25%로 더 낮아집니다. 2019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250만 원, 25년간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노후 연금액은 63만 원 수준입니다. 이것은 2019년의 상대적 빈곤선(기준 중위소득의 50%)인 약 85만 원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이른바 '기금고갈'로 인해 추후 국민연금지급이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서 기인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신은 2~30여 년간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해도 실제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수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거듭나려면 이 부분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는 목소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와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합의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국정과제로 발표하며 시민의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2019년 종료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에서도 당장 소득대체율 삭감을 45%에서 멈추고, 향후 50%까지 다시 상향하자는 방안이 다수 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더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는 퇴직 이후 소득을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제도를 만든 목적은 국민들이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떨어지는 소득대체율을 막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도 보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지금이라도 다시 적정수준으로 회복하여 공적연금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만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한국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최소한 5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연금액의 적정수준보장이 선행되어야,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자원마련 방안을 국민과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어야 합니다



(단위 : 명)

구분	계	남부예외자	장기체납자 ^①
2015년	5,604,391	4,511,565	1,092,826
2016년	5,224,855	4,173,269	1,051,586
2017년	4,841,124	3,826,117	1,015,007
2018년	4,670,229	3,701,287	968,942
2019년	4,338,585	3,276,660	1,061,925

① 지역소득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체납자

출처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류재민. 2020.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 논의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개선에의 시사점",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이슈&동향」 제68호(2020.07.10).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들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199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영세기업 노동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5년 농어촌지역, 1999년 도시지역의 자영업자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2006년에는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 고용형태의 증가와 함께 국민연금 적용제외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이라도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연금 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가입했다라도 사업 중단, 실업 등의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납부예외, 장기체납 상태에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여전히 큰 규모로 남아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동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변화하는 고용형태를 포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여성들이 국민연금에서 많이 제외되어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여성의 경우 가입 기간이 짧아 최저 수급요건 10년을 채우기 힘들고 성별 임금격차에서 비롯된 연금격차도 있습니다. 남성 가장의 은퇴 시 가구 소득 감소 예방을 위해 설계된 가족 중심 사회보험제도에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대폭 늘어난 변화를 반영하여 1인 1연금 제도로의 개

선이 필요합니다. 무불 노동을 하고 있는 전업 주부들이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 역시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하한액 개정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험료 납부 인정제도와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인정제도(크레딧 제도)를 더 확대해야 합니다. 첫째 아이 출산 시 보험료 납부 인정기간을 1년이라도 부여해야 합니다. 육아나 돌봄으로 휴직하는 이에 대해서도 보험료 납부인정제도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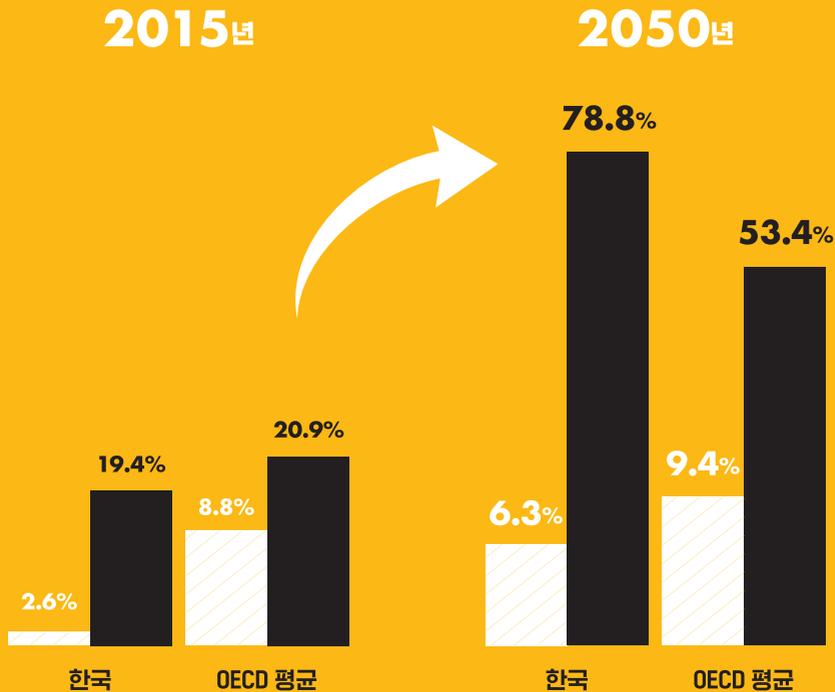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월급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현재보다 보험료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하고 기간도 더 늘려야 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 지원도 필요합니다. 코로나9의 팬데믹으로 소득 감소와 소득상실, 실업, 휴업, 폐업이 증가하자 국민연금공단은 소득감소 기간에 대해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9 팬데믹과 같은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현재의 소득감소, 상실이 미래의 무연금, 저연금으로 인한 노후불안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예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보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국가재정 확충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OECD 공적연금
지출액과 인구비 추계

■ GDP대비 공적연금 지출
■ 노인부양비



출처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9

노후에 대한 공적지출, OECD 국가 중 꼴찌

우리나라는 2018년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예상보다 1년 빨리 진입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은 최고로 높습니다.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적 연금을 튼튼히 하여 노후에 안정된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를 경험한 서구 유럽국가들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OECD(2019)에 따르면 2015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GDP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8.8%인 반면, 우리나라는 2.6%로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50년에는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약 38.9%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노인부양을 위해 국가가 책임 있게 연금에 투자한 나라 중 그 어떤 나라도 재정파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공적 연금에 대한 국가부담을 점차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급속한 고령화의 속도를 감안한다면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현 상황에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노인의 빈곤한 삶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

많은 국민들은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금이 고갈되어도 연금은 지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지급 의무화 조항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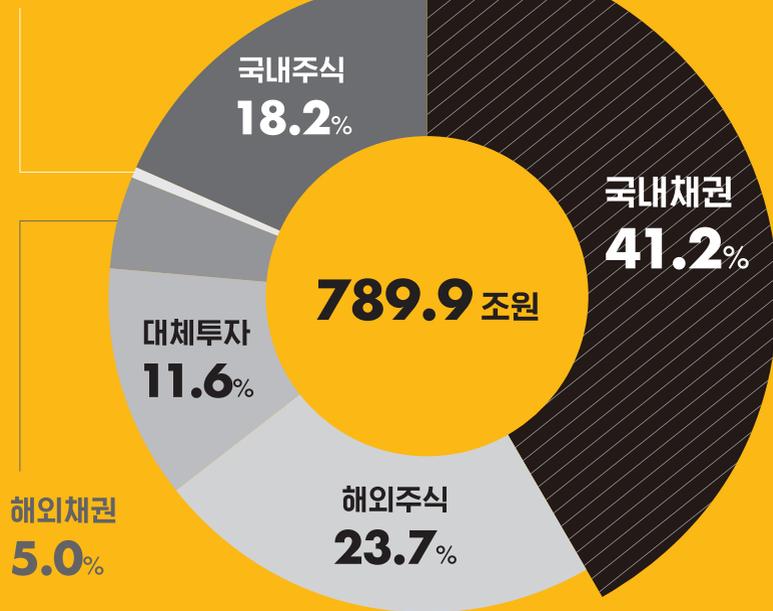
현재 특수지역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법적으로 국가의 지급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국가지급 의무화를 입법화하면 총당액이 국가채무로 잡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며 반대합니다. 그러나 국가지급 의무화를 입법화하더라도 국가재정이 더 투입되는 것은 아니며, 국제사회에서 공적연금에 대한 잠재부채는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급 의무화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자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

기타·복지부문

0.1%



부문	금액	비중
금융부문	788.9	99.9%
국내주식	144.1	18.2%
국내채권	325.2	41.2%
해외주식	187.2	23.7%
해외채권	39.6	5.0%
대체투자	91.7	11.6%
단기자금	1.0	0.1%
기타·복지부문	0.9	0.1%

국민이 노후를 위해 모은 국민연금기금, 국민을 위해 제대로 관리되고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의 99.9%가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 대체투자 등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국내주식 투자 규모만 144.1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 국내주식 자산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직접 운용하는 비중은 54.7%나 됩니다.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하는 상위 10위는 삼성전자, 포스코, LG화학, 현대자동차, SK 등 대기업이고, 평가액 역시 전체 국내주식 투자의 절반이 넘는 62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2019년 말 기준).

하지만 지난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정치적으로 동원됐고, 큰 손해까지 입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크게 훼손됐습니다.

국민연금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횡령과 배임, 사익편취 등에 주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자의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비정규직 확대를 일삼는 반노동 기업에 대해서도 수익률 제고를 명분으로 이를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한 업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사회적 공분을 샀지만, 사회적 참사를 일으킨 기업들인 옥시(258억 원), SK케미칼(545억 원), 애경산업(258억 원), 이마트(4,776억 원) 등에 국민연금기금이 여전히 투자되고 있습니다(2019년 말 기준).

기후위기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석탄발전소에도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면서 국민건강과 환경을 파괴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한 눈에 보는 국민연금기금」 2020. (단위 : 조 원, %).
https://www.nps.or.kr/jspage/fund/mcs/mcs_08_01.jsp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은 오히려 투자를 늘려가고 있고,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환경파괴 기업들에도 투자하면서 국제적인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들에 투자한 금액도 2018년 기준 75개 종목 1조 2,300억 원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와 함께 성장한 미쓰비시 중공업 계열사에만 5년간 5조 6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김광수 의원실).

심지어, 확산탄(집속탄)처럼 무차별 대량 살상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에도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한화과 풍산은 전 세계에 확산탄을 생산·수출하고 있습니다. 무차별로 살포되다 보니, 피해자의 98%가 민간인이고 그 중 1/3이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호주, 덴마크 등 다른 연금국은 비인도적인 무기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금지 정책을 마련하고, 노르웨이 연금(GPFG)은 2006년과 2008년 각각 한화와 풍산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기금은 여전히 각각 1,792억 원, 932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2019년 말 기준).

국민이 노후 준비를 위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환경과 건강마저 파괴하는 기업에 투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회적 가치와 책임은 무시한 채, 투기자본처럼 오로지 금융수익 극대화만을 위해 나쁜 기업에 투자되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책임투자자는 이미 세계 주요 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핵심 철학이자 정책 방향입니다. UN에서도 '유엔 책임투자원칙'을 만들어 이를 지지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도 원칙에 맞게 투자하는지에 대한 공개의무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2009년 '유엔 책임투자원칙'에 가입했지만, 구체적인 운용지침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책임투자' 명목으로 일부 내용만 선택적으로 반영해 제한적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은 단기적 금융이익만이 아닌, 사회와 환경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이익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공적 기금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뿐 아니라, 주주권 그리고 사회책임투자 규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한국의 공공복지인프라 현황



공공병원
시설 수 대비
5.7%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수 대비
11.6%



국공립노인요양시설
2.9%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7.6%

출처 보건복지부(2019), 국토교통부(2020)

내가 낸 국민연금을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한다면?

전 국민이 함께 모은 '사회적 자본'인 국민연금은 국민의 삶을 위해 투자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단기간의 수익을 높일 수는 있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와 기금운용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또한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는 공공복지인프라 확충에 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으로 투자된 공공복지인프라라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연금의 근본적 재정안정 방안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일하는 사람들, 즉 경제활동인구가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간 연대의 원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공복지인프라에 대한 투자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등에 투자하는 아이디어가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채권방식 공공복지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있었고, 학계에서도 그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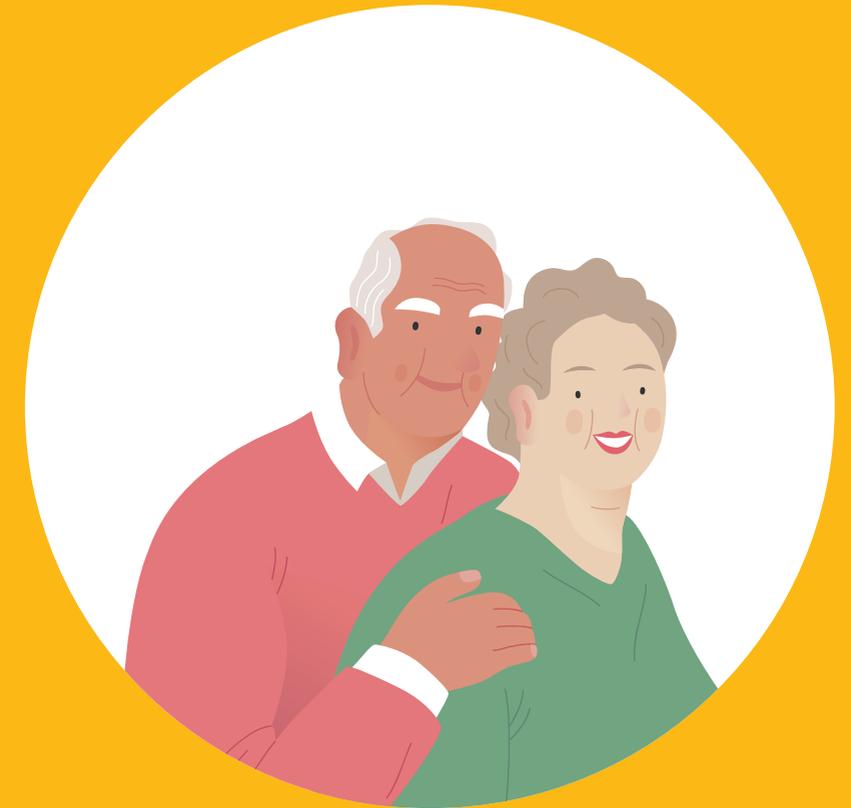
공공복지인프라 확대를 위한 투자,

청년세대 삶의 질 개선의 첫걸음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한다면 아동과 노인 돌봄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 분야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병원을 현 수준보다 확대하면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지방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임대료에 대한 부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복지인프라 확대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고 전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2020년 8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은 790조 원이라는 거대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전혀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의 금융투자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과 사회적 신뢰 제고를 확보하여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청년세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정수준의 기초연금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권리로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반복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제도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65세 이상 노인 전체 인구 834만 명 중 555만 명(수급률 66.6%)만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면 모든 노인에게 차별 없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노인 3명 중 1명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높은 빈곤율, 아직까지 낮은 국민연금 수급률 및 급여 수준을 고려할 때 더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삭감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수급 대상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전액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노동 소득이나 임대 소득 또는 금융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전액 그대로 지급합니다. 모든 노인에게 기본적 권리로서 지급한다는 기초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를 받거나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삭감 또는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적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보충성 원리'(소득이 적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공적 지원은 미달한 액수만큼만 '보충 지원'한다는 원리)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쪼다 뺏는' 기초연금은 40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두 배로 안겨 주는 것입니다. 꾸준히 공적연금을 납부한 사람에게만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성실가입자에 대한 차별이며, 이러한 제도가 지속된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 지금의 청년세대에 대한 차별이기도 합니다. '쪼다 뺏는'

환수 제도, 공적연금 수급 연계 삭감 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꾸준히 올라왔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기초연금은 꾸준히 올라 2020년 현재 저소득 노인은 30만 원, 일반 노인은 약 2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일반 노인도 3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급여가 상당히 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급여 산정에 사용하는 평균소득월액(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비교해 보면 2012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2%였으며, 2020년 현재는 10.4%(일반 노인 기초연금액 기준)입니다. 노인의 기본적 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최소 평균소득월액의 15%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큰 폭의 인상을 제시하고 이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소득 대비 비율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것은 매해 소득과 물가가 인상되지만 기초연금 인상률은 물가 인상률만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매해 금액이 올라가도 실질 가치는 조금씩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가인상률이 아니라 국민연금 평균소득월액 인상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을 소개합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노동자, 시민, 청년, 노인이 모두 함께 공적연금 개혁운동을 펼치는 연대체입니다. 2012년 발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으로 출발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와 함께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기치로 노후의 빈곤예방, 가입자 중심의 자금운용 등 다양한 연금개혁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지난 활동의 성과를 이어 받아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의 권리와 존엄,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15년 3월 11일 전국 306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으로 확대재편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입장에서 공적연금제도를 강화·재정립하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적연금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의 삶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과업이 되었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존엄한 삶이 보장되고, 세대 간의 연대를 통해 적절한 노후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적연금의 강화를 위해 충실히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이가 750조 원을 넘어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는 국민연금기금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투자될 수 있도록,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세대와 현세대가 모두 만족하는 공적연금제도로 만들어 가길 희망합니다.

함께하는 단체(가나다순)

제안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단체 총 306개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 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 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 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 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 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 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 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교육청치방공무원노동조합, 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노년유니온,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후희망유니온,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동자동사랑방, 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새물약사회,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예수살기,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거제여성장애인연대, (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남노티나무부모회,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라센터, 나무를심는학교, 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란들판, 노원중장애독립생활센터, 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리학교, 다규인, 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전장애인부모연대,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을공동체연구소, 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 민중의힘,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바래미야간학교, (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산반빈곤센터, (사)부산장애인부모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위원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세움센터, 수원중

중장애인독립생활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흥두리센터, 실로암사람들, 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심과인권나무,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 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산중장애인지립생활센터,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천익산센터, 이천준열사추모사업회,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작은자야간학교,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장애인자립선언, 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인푸른아우성,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 전남장애인여성연대, 전북주거복지센터, 전북중장애인지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중구주민회, 중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주삼층중장애인지립지원센터,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척수장애인자모모임 인동초, 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장애인부모회, 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퇴출장애인복지재단, 평화캠포울산지부, 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정신장애연대,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행동하는이사회나눔과열림, 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재단,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주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회,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유니온, 추모연대, 통일광장, 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홀리스행동,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하는
노후불안 처방전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발행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주소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13, 601호
홈페이지 www.pensionforall.kr
대표전화 070-4211-6578
이메일 pension1045@gmail.com
디자인 더디앤씨 www.thednc.co.kr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하는
노후불안 처방전**